

2. 서울特別市道路區議會委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(案)檢討報告書

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
전문위원 백 철 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☐ 제출일자 : 2003년 12월 12일
☐ 제 출 자 : 나승혁의원 외 7인

2. 위원회 회부

- ☐ 회부일자 : 2003년 12월 12일
☐ 상정일자 : 2003년 12월 16일
〈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〉

3. 개정사유

- ☐ 지방의회의원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의회의원 신분증을 위·변조하여 목적 외 사용 등 악용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사전 예방 및 대비하고,
☐ 위·변조가 용이한 현재의 인쇄지류로 신분증을 보완이 강화된 플라스틱류의 재질과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도록 신분증의 규격, 서식, 색상 등을 변경하고자 우리 구 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☐ 제3조제2항 삭제
☐ 신분증 규격, 서식을 별지 형태로 변경(안 별표)

5. 검토의견

- ☐ 관련법규에의 부합여부
- 지방자치법 제37조의2(회의규칙)에 의하면 “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”라고 되어 있어 의원 신분증의 규격,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의회 내부운영 사항으로 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므로
 - 의회의원 신분증의 규격, 서식 및 색상 등을 변경하는 것은 당해 규칙을 제정·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의회 내부운영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.
- ☐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
- 현재의 신분증은 위·변조가 용이한 인쇄지류로 되어 있어 분실 등에 따른 목적 외 사용 등 악용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서식 및 색상이 현대 감각에 뒤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보완이 강화된 플라스틱류의 재질과 현대 감각에 알맞는 서식 및 색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현재의 추세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

6. 수정의견

- ☐ 안 제1안(목적), 제3조(신분증규격, 제식 및 색상)중 “제식”을 “서식”으로 한다. ⇒ 자구표현이
구시대적으로 현대용어 순화에 맞게 자구 수정

7. 관계법령 발췌

- ☐ 지방자치법 제37조의2(의회규칙)
-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
정할 수 있다.